

【주간포커스】

생명보험 전매거래와 거래당사자 보호

김해식 전문연구위원

최근 국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 전매(또는 정산)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전매거래가 도입되면, 보험 소비자로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되팔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. 그러나 장수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계층의 보험증권은 전매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결국 주된 전매 거래 대상은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층의 보험증권이 될 것인데, 보험회사의 보험금선지급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전매거래 대상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과다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.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당초 기대된 긍정적 효과 대신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. 따라서 거래당사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.

□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유통시장 참가자들을 자본시장 투자자까지로 확대하여 전매 거래 당사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.

- 보험소비자는 전매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사망보험을 보험회사 뿐 아니라 제3의 투자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되고,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정산금액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.
- 투자자도 전매거래를 통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보험위험이 일반적인 금융위험과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□ 최근 국회에서는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도입에 필요한 상법 및 보험업법의 개정안이 발의됨.

- 현재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오직 가입한 보험회사에게만 보험증권을 되팔 수밖에 없는 상황임.

- 현행 법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- o 이에 상법 개정안은 전매거래를 통해서 투자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.
-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생명보험전매업(전매거래회사)의 허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험업법에서 다루도록 함.

□ 그러나 전매거래가 허용되더라도 전매거래회사(투자자)의 장수위험관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매시장의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

- o 전매거래회사는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투자수익이 감소할 가능성(장수위험)에 노출되어 있으나, 장수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음.
- 따라서 전매거래회사들은 자체 자본력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,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게 될 것임.
- o 국내에서도 전매거래에 참여하려는 보험계약자가 충분하더라도 장수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전매거래회사로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이 짧은 계층의 보험증권 매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임.
- 전매거래가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,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본시장에서 장수위험을 인수해주기 시작하면서 거래 범위가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시한부 환자에서 기대여명이 보다 긴 고령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음.

□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된 계층은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가입금액이 큰 보험증권을 지닌 소득 중상위 계층이 될 것으로 보임.

- o 전매거래회사의 장수위험 관리가 어려운 국내 여건상 기대여명이 많이 남아 있는 보험증권에 대한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임.
- o 결과적으로 시한부 환자 등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증권이나, 보험가입금액이 매우 큰 보험증권이 전매거래의 대상이 될 것임.
- 오히려 현금수요가 커서 전매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보유한 일반 보험증권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.

□ 더구나 대체상품으로 인해 전매시장의 보험증권 공급이 줄어들어 인수경쟁이 심해지면, 당초 기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.

-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이미 보험금선지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, 이는 전매시장에 공급될 보험증권의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 -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암,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 - 이렇듯 공급이 한정된 전매시장에서 보험증권의 인수 경쟁은 치열해질 것임.
- 경쟁이 치열해지면, 보험증권 모집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, 부실한 투자공시 등으로 인해 낮은 정산금액, 투자수익률 과장 등 거래당사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 - 해외사례는 보험계약자와 전매거래회사를 이어주는 보험모집인과 중개인이 무리하게 전매를 권유하거나, 보험계약자에게 모집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,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,
 - 전매거래회사의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는 전매거래회사가 투자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인수한 보험증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사기까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.

□ 전매거래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, 전매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.

- 개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정산금액 이외에도 중도인출, 납입유예 등 현금수요를 충족할 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화, 모집인/중개인의 면허제 도입, 피보험자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, 투자정보 공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전매거래는 생명보험을 구매하려는 신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전체 생명보험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전매제도의 도입과 안정화에 기초가 될 것임.
- 장기적으로는 장수지수 개발 등과 같은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장수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본시장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 KiRi